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339

발의연월일: 2021. 7. 5.

발 의 자: 강득구·고영인·김민석

박성준 · 송갑석 · 어기구

윤준병 • 이규민 • 이성만

이수진(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교육활동 침해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활동의 주된 침해행위 주체가 학생 및 그 보호자이고, 교원 간 갈등이나 관리자에 의한 부당행위는 고충 및 감사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청 관할로 이관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를 학생과 그 보호자로 명확하게 한정하는 한편, 지역교권보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충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이 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 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관련 자료 등을 누설할 수 없는 근거를 마 련하고자 함(안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 제19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를 "「유아교육법」에"로, "보호자 등이"를 "보호자가"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를 "제19조제2항에 따른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을 "제2항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한 교육장은"으로 하며, 같은조 제4항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을 "교육활동"으로, "고발하여야 한다"를 "고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를 "피해교원의"로 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

해교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교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교원이 긴급한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 다.

제18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로, "경우에는 해당 학생"을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한다)"으로, "수 있다"를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를 "교육장은 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로, "있다"를 "있으며, 그 기간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관할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를 "지역교권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으로, "할 때에는"을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제1호부터"를 "제2항제1호부터"로, "제2항 및 제3항에"를 "제3항 및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전단 중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을 "제2항에 따라 교육장이 한"으로,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침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 이 경우 특별교육은 보호자와 학생이 함께 받아야 한다.
- ⑦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요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⑨ 교육장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침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침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 ①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9항에도 불구하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 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 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며, 같은 항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 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 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자 및 피해교원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 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교원, 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법률 제17952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제17952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1항 중 "제18조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을 "제18조제5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특별교육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 대 한 조치) ① 「유아교육법」에 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 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 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 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그 사실 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을 알려야 한다.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 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 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 ② 보호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 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 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1. ~ 3.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감독기관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 교 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 호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 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 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교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교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교원이 긴급한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의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3	제23	항 2	रे डे	호의	조치	(이하
"보	호조	치"라	- 한	다)틭	를 한	교육
<u>장</u> 은	<u>-</u>					

- 1. 2. (생략)
-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 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 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 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 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기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활청이 부담하고 이에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생략)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 저 한 조치 등) <신 설>

1.•2. (현행과 같음)
4
교육활동
고발할 수 있다.
⑤ <u>피해교원의</u>
· ⑥ (현행과 같음)
세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
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7. (생략)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 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 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
항에 따라
<u>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u>
한다)
<u>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u>
<u>한다</u>
1. ~ 7.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등학
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조
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의 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u>한다.</u>
<u>한다.</u> ④ 교육장은 제2항제1호, 제2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할 수 있다.

- ④ 관할청은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 다. <후단 신설>
- 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조치를 <u>할 때에는</u>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 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⑥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u>제1항제1호부터</u> 제3호까

<u>있으며, 그</u>
기간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u> 정한다</u> .
⑤ 지역교권위원회는 제2항부
<u>터 제4항까지에</u>
이 경우 특별교육은 보호자
와 학생이 함께 받아야 한다.
⑥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
<u>ŏ</u> }
교육장에게 요청하
<u>기 전에</u>
<u>.</u>
⑦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요
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요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
급학교의 장은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u>8</u>
제2항제1호부터

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⑧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3항 및	제4항에	

__

⑨ 교육장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 는 침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침해학 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 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①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9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제2항에 따라 교육장이 한-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 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 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 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 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2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⑨ (생략)

제19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전 운영)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 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생략)
- 2.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삭 제>

 다음 각 목의 분쟁 조정

 가.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

 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

 니한 분쟁의 조정

「행정심
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u><후단 삭제></u>

	<u>12</u>	(현	. 행	제9	항과	같음)		
저	193	조()	교권	보호	위원	회의	설치	•
	운(영)	1					
	1.	(현	행괴	- 같	음)			

나.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 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 한 유치원의 교원의 교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 정

3. (생략)

②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둘수 있다. <단 선 신설>

1. ~ 4. (생 략) ③ (생 략) <신 설>

3.	(혀	행과	같음)
Ο.	\ '-'	0 - 1	

② -----

- 1. ~ 4.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비밀누설금지 등) ①

법률 제17952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벌칙) (생 략) 이 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비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자 및 피해교원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

 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 교원, 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 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 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 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법률 제17952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벌칙)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법률 제17952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4항에 따른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
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②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누설한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제17952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과태료) ①
제18조제5항에 따른 특별교
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② (현행과 같음)